

2015.07.20

'사후관리에 관한 고시' 일부 개정 안내

1. 개정이유 및 시행일자

개정이유

- 사후관리 위탁물품 관리.감독 강화 등을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

시행일자 : 15. 7. 23.(목) 예정

2. 개정내용

1. '사후관리 위탁물품' 관리.감독 강화

- 사후관리 업무 소홀 시 위탁 취소 근거 신설(제25조)
 - 위탁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소홀 시 **사후관리 위탁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신설**하여 사후관리위탁물품에 대한 관리.감독 강화
- 사후관리 재위임.위탁 시 사후관리 점검 의무 신설(제28조)
 - 사후관리 수탁기관이 수입추천기관 등에게 사후관리업무를 재위임 .위탁하는 **경우 사후관리 적정 여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**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위탁물품에 대한 관리.감독 강화

2015.07.20

2. 관련 법규 개정사항 반영

- 「관세법」 제95조 개정('11.1.1)으로 방위산업용품이 감면대상에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리(제3조, 별표 2호)
- 「도로명주소법」 개정('15.8.1 시행 예정)에 따라 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체계 변경(6자리 → 5자리)(별지 16호)